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 4-1	204

작업장 자료

b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2차 워크숍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사무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2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22-16

전화 521-5364, 팩스 584-7701

일시: 1992년 9월 29일 오후 7시

장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

주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활동보고

- 4월 11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어렵다고 인지한 공대위는 부모, 교사, 학생, 교수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수교육 특위)를 구성.**
- 4월 18일 **공대위는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만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요원하다며 '특수교육법(가칭)'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음.
이날 교사소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난 후 모임을 갖고 교사소위원회의 영역별 (지체, 청각, 시각, 정신, 특수학급 초 중등부)대표를 구성.**
- 4월 24일 **교사소위원회의 임시대표선출 ... 김주영 (안산명해학교 교사)**
이후 각 소위는 5월 한달 매주 1회 모임을 가지고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작업을 실시.
- 5월 21일 **조기교육교사 교사 소위에 본격 참여...조기교육분과 구성**
- 5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특수교육특위 모임. 각 특위별 1차 보고서 발표.**
- 6월 10일 **각 소위는 6월 13일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준비를 위해 모임.**
- 6월 13일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법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대위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에서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
- 이후 특수교육특위는 매주 1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협회안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지적.
- 7월 9일 **특수교육 특위는 연구소에서 모임을 가지고 기존의 법안과 문제점을 취합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기교육분과는 조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또한 특수교육진흥법내에 있는 교육법 조항을 뽑아내어 개정안을 제시.**
- 7월 17일 **교육법에서 특수교육 관련 조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제시.**
- 7월 23일 **특수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구성.**
- 8월 6일 **17일에 있을 제 1차 워크샵준비를 위해 교사들 모임.**
- 8월 1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워크샵 개최.**
- 8월 24일 **교사소위원회의 김주영교사는 1차워크샵 결과 정리.**
- 8월 26일 **각 대학 특수교육과 교수에게 공대위의 특수교육 관련 법안 보내 의견을 물음.**
- 9월 1일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위 제 2차 워크샵을 위한 모임.**
- 9월 7일 **교수의견 취합하여 공대위안 손질.**
- 9월 16일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2차 워크샵을 대비하여 공대위안 마무리 작업.**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 2차 워크숍

일시 : 1992년 9월 29일 오후 7시

장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

주최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워크샵 순서

사회자 : 윤점몽(전주우석대학 특수교육과 교수)

개회 사회자
주제발표..... 김주영(명혜학교 교사)
지정토론.....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박현숙(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
 최 혁(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김승국(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정정진(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화문(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질의응답
폐회..... 사회자

주제발표문

목 차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1.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 특수교육법 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제안 이유

우리나라의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사이에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취학의무를 유예하고,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시켜 생각하며, 교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만족스럽게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내에서 특수교육 관련 조항들을 수정, 신설, 삭제하는 등의 현행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요 골자

1. 장애인의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완전 의무교육으로 한다.(제 8조의 2)
2.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을 일반 교사의 자격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구체화하며, 특수교육 요육교사를 새로 명시한다.(제79조 제1항과 별표 1, 제2항의 별표 2)
3. 장애인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제 81조)
4. 각급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

로 명시한다.(제96조의 2, 제102조의 3, 제107조의 6, 제148조의 2)

5. 장애인의 취학을 가로막는 제98조의 유예 조항을 삭제한다.
6.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특수학교의 부설을 의무화한다.(제 126조 제 3항)
7. 제5장 제9절 '특수학교' 부분의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목적, 노력, 대상, 종류, 수업 연한,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 설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제 143조 - 제144조)
8.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155조 제2항)
9.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교과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157조 제3항)

현행법	개정법	개정사유
<p>教育法</p> <p>(1949年 12月 31日) 法律第86號</p> <p>(1991. 12. 31. 법률 제4474호)</p> <p>第1章 總則</p> <p>第8條 [義務教育] ① 모든 국민은 6年の 初等教育과 3年の 中等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實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을 확보함에 필 요한 모든 措置를講究하여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內의 義務教育 實施對象인 全體를 對象으로 義務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⑤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國民學校와 中學校와 中學校를 設置·經營하여야 한다. ⑥ 그 管轄區域內의 義務教育 實施對象인 全體를 對象으로 義務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또는 中學校를 設置·經營하거나 設置한 地方自治團體 또는 國立이나 私立의 中學校에 實施對象인 全體에 대한 義務教育을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호외 84.8.2)</p> <p>第8條의2 [中等教育에 대한 義務教育] 第8條의 規定에 의한 3年の 中等教育에 대한 義務教育은 大體로 義務를 實施한다. (호외 84.8.2)</p>	<p>제 8조의 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 8조의 의 해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및 중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을 제외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 심신에 장애를 지닌 자의 교육은 아동발달의 이분상 0세부터 의무화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제 8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학교·중학교까지의 교육받을 권리를 완전히 보장함이 바람직하다.</p>

第2章 및 第3章 (第15條 내지 第72條) 刪除 <제 3.8>

第4章 教育員

第79條 [敎員의 區別과 資格] ①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교육 정교사(1급·2급)·특수교육 실기교사, 양호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자기직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 교장·교감·원장·학장은 법표 2의 자기직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법표 3의 자기직급에 해당하거나, 교수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자기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호외 74.12.23>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기직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호외 90.12.27>
⑤ 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기직급 및 자진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호외 72.12.16.

第5章 教育機關

第1節 學 校

第81條 [學校의 種類]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性別, 性別, 社會的地位에 依한 差別이 없이 그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學校를 設置한다. <호외 77.12.31, 81.12.31>

1. 國民學校·小學校·高等學校·大學
2. 教育大學·師範大學
3. 專門大學·放送通譯大學·開放大學
4. 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
5. 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6. 特殊學校
7. 幼稚園
8. 盲啞學校

제 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특수교육 정교사(1급·2급), 특수교육 실기교사, 양호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자기직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③·④·⑤·⑥은 좌동

제 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장애 유무,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국민학교·고등국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교를 모두 맡고 있으므로 현행의 '특수학교 교사'라는 명칭은 '특수교육 교사'로 바뀌어야 한다. ②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이 일반 교사의 자격과 형평이 맞지 않아 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승진이나 처우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③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육 교육교사가 있으므로 이를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

· 장애를 이유로 상급 학교의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장애 유무'를 삽입시켜야 한다.

현행법	개정법	개정사유
<p>第2節 國民學校</p> <p>第96條 國民學校에 就學시킨 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가 滿6歲가 된 다음날 이후의 最初學年으로부터 滿12歲가 되는 날이 屆하는 學年까지 그 子女를 國民學校에 就學 시키야 한다. <改定 84.8.7></p> <p>②第1項의 義務範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定 68.11.15></p> <p>第98條 學齡兒童이 不具, 廢疾, 病弱, 發育 不完全 또는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就學 하기 不能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義務를 免除 또는 緩慢할 수 있다.</p> <p>第3節 中學校</p> <p>第102條의 2 (中學校에 就學시킨 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가 國民學校를 卒 業한 다음 學年으로부터 滿15歲가 되는 날이 屆하는 學年까지 그 子女를 中學校에 就學 시키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의 範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舊法 84.8.2)</p> <p>第4節 高等學校</p> <p>第107條의 5 (教育要員 및 授業者 初審行 爲의 금지) 第103條의 5 및 第103條의 6의 規定은 第107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校 및 高等學校에 이를 準用한다. (舊法 76.12.31)</p> <p>第5節 大學</p> <p>第126條 ①教育은 實地로 研究實踐하기 爲 하여 教育大學에 國民學校를, 師範大學에 國民學校, 中學校와 高等學校를 附設한다.</p> <p>②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公立의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p> <p>③必要한 境遇에는 教育大學, 師範大學에 功權 限, 特別學校, 技術學校 또는 其他 研究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p>	<p>제 96조의 2 국민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국민학교 취학연령에 달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98조 삭제</p> <p>제 102조의 3 중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국민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07조의 6 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중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26조 ①·②는 과동 ③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유치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④교육을 실지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관한 특수학교를 부설한다.</p>	<p>· 국민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사실상 가로막아 온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p> <p>· 중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 대상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해와 교수 방법을 숙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부설학교가 있어야 한다.</p>

<p>第6節의 2 專門大學</p> <p>第6節의 3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p> <p>第7節 技術學校의 高等技術學校</p> <p>第8節 公民學校와 高等公民學校</p> <p>第9節 特殊學校</p> <p>第143條 (目的) 特殊學校는 弱聽覺障礙者를 障者人에게 功權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 및 技能을 培植을 目的으로 한다. <改定 81.2.13></p>	<p>제143조(목적) 특수학교는 중증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43조의 2 특수학교 교육은 제 14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단계의 과정보다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켜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여건에 맞는 장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하여 그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여건에 맞는 장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p>제 143조의 3(특수학교 취학 대상) 특수학교 취학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 장애인 2. 청각 장애인 3. 정신 지체인 	<p>· 특수학교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다.</p> <p>◎ '특수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절을 다른 절과의 평행에 맞도록 하며, 특수학교의 종류와 전문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제 143조의 2 부터 6까지 대폭 신설한다.</p> <p>· 특수학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규정하여야 한다.</p> <p>· 특수학교의 취학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p>
--	--	--

현행법	개정법	개정시유
<p>제 144條 市·道는 特殊學校를 各 1校以上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72.12.16.88.4.6></p>	<p>4.지체 장애인 5.정서 장애인</p> <p>제 143조의 4(특수학교의 종류) ① 특수학교는 제 143조의 3에 해당하는 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 3. 정신 지체인을 위한 학교 4. 지체 장애인을 위한 학교 5. 정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 <p>② 지역적인 형편에 따라 제 1항의 두 가지 이상의 종류를 포함하는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명칭에는 장애유형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p> <p>제 143조의 5(특수학교의 수업 연한) 특수학교의 수업 연한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각의 수업 연한에 준한다.</p> <p>제 143조의 6(전공과 설치) ① 특수학교에는 고등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제 143조의 3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문 직업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전공과의 설치·운영·종류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 144조(특수학교 설치 의무) ① 각 시·군은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각 1교 이상 설립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p>	<p>· 특수학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②항과 ③항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 특수학교의 수업 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 장애인의 졸업 후의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문 직업기술을 교육하는 전공과의 설치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p> <p>·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불편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하다.</p>

<p>제 145條 特別學校 國民學校 또는 中學校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建物を 充當하여 다음 各條의 1에 해당하는 學生을 위하여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肢體不自由者 2. 精神障礙者 3. 精神薄弱者 4. 聽覺障礙者 5. 視力障礙者 6. 言語障礙者 7. 기타의 障礙者(另改 88.4.6) <p>第 10 節 幼稚園</p> <p>제 148條 (入學年齡) 幼稚園에 入學할 수 있는 者は 滿3歲부터 國民學校就學始期에 達하기 까지의 幼兒로 한다.</p> <p>第 11 節 各種學校</p> <p>第 6 章 校 長</p> <p>第 7 章 學科와 敎科</p> <p>第 155條 [學科·敎科] ① 大學·師範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特殊學校를 제외한 各學校의 敎科用圖書는 敎育部가 著作權을 取得하거나 協定 또는 協定한 것에 限한다. <改正 70.1.1.74.12.24.77.12.31></p> <p>② 附錄 <77.12.31></p> <p>③ 敎科에는 必らず 外國어에 選擇科目을 둘 수 있다.</p> <p>④ 中學校는 全敎科의 15퍼센트 以上은, 人文系 高學科는 全敎科의 10퍼센트 以上을 實科로 課하여 學生 各으로 하여금 1人 1科는 選擇케 하여야 한다.</p> <p>第 157條 ①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를 除外한 各學校의 敎科用圖書는 敎育部가 著作權을 取得하거나 協定 또는 協定한 것에 限한다. <改正 70.1.1.74.12.24.77.12.31></p> <p>② 敎科用圖書의 著作·協定·協定·發行·供給 및 協定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7.12.31></p>	<p>제 145조 삭제</p> <p>제 148조의 2 유치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유치원에 제 148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장애 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55조 ① 과동 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④는 과동</p> <p>제 157조 ①·②는 과동 ③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특수학급'에 관한 부분적인 조항이므로 제 96조의 2와 제 102조의 3, 제 107조의 6, 제 148조의 2로 대체하며, 본 조항은 삭제한다.</p> <p>· 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을 감안할 때 일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므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더불어 별도로 정해야 한다.</p> <p>·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과용 도서는 그 대상의 장애별, 능력별 특성 때문에 일반교과용 도서와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p>
---	---	---

[별표 1] 교사 자격 기준

학교별	중등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정 교사 (1급)	1.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중(2급)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중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 교육과를 졸업한 자.	1.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1급) 자격중을 가진 자.
정 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초급대학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교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을 가진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4. 중등학교 교사자격중 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학점을 이수한 자.	5.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7. 국민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중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대학졸업자로서 중등학교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9.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준 교사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행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교도교사	생 략
사서교사	내 용 생 략
실기교사	내 용 생 략
양호교사	내 용 생 략

학교별	중등학교(중·고등부)	국민학교(초등부)	유치원(유치부)
정교사 (1급)	1. 중등학교 특수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특수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 면제함).	1.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을 면제함)..	1. 유치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유치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을 면제함).
정교사 (2급)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중등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국민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중등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정고시에 합격한 자.	국민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정고시에 합격한 자.	유치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정고시에 합격한 자.
요육교사	대학의 치료교육과 졸업자로서 특수교육 요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비고 :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학교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교별	중등학교	국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교장 (교감)	1. 中等學校의 校長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3. 教育大學·專門大學의 學長으로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1. 國民學校의 校長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1. 中等學校 校長 資格證을 받은 者 2. 實技敎師資格證을 가지고 9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1.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수, 부교수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幼稚園의 園長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교장 (원감)	1. 中等學校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中等學校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3. 教育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6年 이상의 教育經歷이 있는 者	1. 國民學校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國民學校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1. 中等學校 敎監 資格證을 가진 者 2. 實技敎師資格證을 가지고 6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1. 특수교육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幼稚園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2. 幼稚園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備 考

- 이 표중 國民學校는 公民學校 또는 이와 同等程度의 各種學校를, 中等學校는 中學校, 高等學校, 高等公民學校 또는 이들과 同等程度의 各種學校를, 技術學校는 高等技術學校를 포함한다.
- 校長·校監·園長·原監·敎育長·實學官·實學士·敎育研究員·敎育研究士의 經歷年數는 敎育經歷年數로 볼 수 있다.
- 이 표중 專門大學의 學長에는 尙書의 專門學校·實業高等專門學校의 校長과 學監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특수교육법 제정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제안 이유

1. 시대적으로 변화된 인식의 수용

1979년부터 시행되어온 특수교육 진흥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하기 그지 없었던 장애인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질적인 이해가 증대되면서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교육환경을 최소화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는 통합교육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기회의 완전한 확보, 발달 단계에 따른 조기교육의 중요성, 개인간·개인내 차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의 필요성,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부모교육의 필요성 등 수많은 이념과 요구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은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과 요구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한 부분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 법을 제정한 동기가 우선 특수교육의 진흥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질적인 측면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선진 특수교육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을 대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규정한 특수교육법의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수교육법의 제정 목적은 크게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권의 완전한 확보, 그리고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현, 기타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에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2.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사람들은 흔히 통합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접근해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통합교육 차원에서의 특수교육은 단순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물리적인 통합은 국가 사회적으로 전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진정한 통합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에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며, 통합교육은 그러한 태도와 경험을 토대로 장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3.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한편, 국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시급히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기회는 헌법과 법률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무교육일 뿐 현재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 무려 두배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정작 학교가 없어 그 뜻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더라도 입학에서의 불이익, 학교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수많은 차별교육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낙도의 몇명 어린이를 위해서는 분교까지 설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도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편견과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수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뿐만 아니라,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학교는 그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영역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는 직업교육 외에도 조기부터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그 방면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

출 실기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당면한 요구의 수용

이상에서 밝힌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과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확보, 현실성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는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수용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로서 특수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제안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당면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에 대한 제안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골자

1. 통합교육의 이념

- 1)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명시한다.
- 2) 특수학급의 목적, 설치, 종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 3) 특수교육권자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4) 특수교육권자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불이익처분 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5) 조기교육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2.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완전한 교육권 확보

- 1) 조기교육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 2) 전공과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 3) 특수교육권자의 판별 등을 위한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4)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5)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를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의 수준으로 한다.
- 6)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 7) 특수교육권자의 교육 연령을 0세부터로 한다.
- 8) 특수교육권자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한다.

3. 현실성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 1)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 2)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3)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4)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4. 기타

- 1) 특수교육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다.
- 2)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3) 국립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립한다.

특수교육법 제정안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법 제 1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말한다.
2. “조기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0세부터 학령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 기관”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등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영아 및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조기교육원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교육 교원”이라 함은 특수교육 교원의 자격을 소지하고 특수교육 기관에서 이 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이 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 가운데 제 2장에 규정된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에서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 기관 및 일반교육 기관에서의 입급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자에게 특수교육 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기타의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6. “각급학교”라 함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 기술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포함)을 말한다.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 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3. 특수교육 기관의 설치 및 시설·설비의 확충 경비
 4. 특수교육권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각급학교의 편의시설 개선
 5. 특수교육권자의 진단·판별·배치
 6.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7. 특수교육권자의 취학 및 졸업 후의 지도
 8.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개선
 9. 특수교육 기관의 경영 및 감독
 10. 특수교육 교원의 인사교류
 11.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개발
 12. 재가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도
 13.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설비 지원
 1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조(특수교육권자) ①특수교육권자는 “특수교육 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 15조의 기준에 의하여 판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각 장애인
2. 청각 장애인
3. 정신 지체인
4. 지체 장애인
5. 정서 장애인
6. 언어 장애인
7. 학습 장애인
8. 기타의 심신 장애인

②특수교육권자의 교육 연령은 0세부터로 한다.

제 5조(권리교육) ①제 4조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 4조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 6조(무상교육) ①제 4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과의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②제 1항에 의한 무상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각급 학교의 장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지원의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조에 해당하는 자가 각급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지원을 하였을 경우 시험시간 연장 등 입학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그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각급 학교의 장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 등 모든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조(순회 교육) ①제 4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권자 가운데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로부터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 기관 및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자라 하더라도 교육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②제 1항에 처해 있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기관에서 일반교육 기관으로 통합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10조(사립특수교육 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및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제 운영비를 국·공립특수교육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 2장 특수교육 판별위원회

제 11조(목적) 특수교육권자를 조기에 정확하게 판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판별위원회(이하 "판

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 12조(조직) ①교육부 장관 산하에 "중앙 판별위원회"를 둔다.
 ②서울특별시·각 도 및 직할시에는 "시·도 판별위원회"를 둔다.
 ③각 시·군(구)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를 둔다.

제 13조(구성) 판별위원회의 구성 대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조(임무) ①"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권자의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권자의 해당 교육기관 배치
3. 특수교육 기관 및 일반 교육 기관의 판별 의뢰에 따른 판별
4. 부모 상담

②"시·도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정밀검사 및 재검사
2. 시·군(구) 판별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의 적절성 심의
3.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판별 도구 개발
4.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반 노력

③"중앙 판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2. 교육과 관련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확한 통계 마련
3. 시·군(구) 판별위원회와 시·도 판별위원회의 지휘·감독

④특수교육권자 및 그 보호자는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급 판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특수교육권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시·군(구) 판별위원회" 및 "시·도 판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중앙 판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판별 기준 및 방법) 특수교육권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 판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조(부모의 참여) ①판별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판별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장 특수교육 기관

제 1절 조기교육원

제 17조(목적) 조기교육원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기교육을 통해 심신 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조(조기교육원의 설립·경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경영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 19조(설립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다.
②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0조(폐쇄 명령) 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자가 제 3장 1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 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 21조(지휘·감독) 조기교육원은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22조(장학 지도) 각 시·도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 23조(취원 대상의 연령) ①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자는 제 4조에 해당하는 0세부터 학령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조기교육원은 취원 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부와 유치부를 두되,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유아부에서, 만 3세부터 학령전까지는 유치부에서 각각 교육한다.

제 24조(조기교육원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조기교육원에는 원장 및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원장은 조기교육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③원감은 특수교육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특수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④교사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 25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당해 조기교육원을 대표한다.
②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조기교육원의 사무를 수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및 원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조(교직원의 임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교육감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자가 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조(복무) 조기교육원의 원장·원감·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절 특수학교

제 28조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 5장 9절에 의한다.

제 3절 특수학급

제 29조(목적) 특수학급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통합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0조(특수학급의 설치) ①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96조의 2, 제 102조의 3, 제107조의 6, 제148조의 2에 의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권자의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1조(특수학급의 종류) ①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하되 지역의 여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 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정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전일제 특수학급
2. 시간제 특수학급
3. 특별 지도실

제 4장 개별화 교육

제 32조(목적) 개별화 교육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개인의 지능, 학습능력, 정서, 학습습관, 생활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환경 등을 달리하여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3조(개별화 교육 계획) ①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학하는 자의 개별화 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누가관리하여야 한다.

②개별화 교육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34조(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 ①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학하는 자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35조(문서화 의무) 담당교사는 연 1회 개별화 교육 계획서와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조(개별화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 ①개별화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하로 하되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수를 현실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②개별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교사의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장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 37조(진로교육) ①특수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로교육의 대상과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 38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 기관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장차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전문 자격을 갖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④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장 특수교육 시설·설비

제 39조(목적) 특수교육 시설·설비는 특수교육권자들이 장애별·정도별로 효율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기관에 설치한다.

제 40조(설치 기준) 특수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장 장학금과 학비 감면 등

제 41조(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2조(학비 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 43조(부모교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조(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①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권자의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②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간에 원만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방침을 세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 45조(국립 특수교육 연구원)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애별 전문 연구는 물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조기교육원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계획의 연구개발, 각종 교재·교구의 개발, 특수교육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국립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 8장 벌칙

제 46조(폐쇄명령 등 위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조(의무교육 위반자)
2. 제 9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3. 제 19조(무허가 조기교육원)
4. 제 20조(폐쇄 명령 위반)
5. 제 21조(지휘·감독 위반)
6. 제 26조(입면보고 해태)

제 4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20조(폐쇄 명령 위반)
 2. 제 21조(지휘·감독 위반)
 3. 제 22조(장학 지도 위반)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 교육감이 부과하여 징수한다.
-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 1조 : 시행일자

제 2조 : 용어의 변경(특수교육권)

제 3조 : 시설의 경과조치

제 4조 : 이 법의 실시와 동시에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목 차

1.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신.구 대비안
2. 특수교육 관련법 비교

교육부안 (특수교육진흥법) 신·구조문 대비

현	정
<p>제1조 (목적) 이 법은 시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 구화 및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병설된 학급을 말한다. 	<p>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1조, 교육법 제3조의 임법정신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내에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그들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특별히 고안된 교육방법으로 고교교육, 오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시로서 특수교육 대상자 집단,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포함)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병설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실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반교사로서의 지질외 특수교육 소임을 갖은 시로서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학생이라도 특별히 분리된 특수학교교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정상적인 교육관정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이동능력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등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원이 가정, 수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	정
<p>제1조 (목적) 이 법은 시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 구화 및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병설된 학급을 말한다. 	<p>제3조 (특수교육대상자)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장애인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회복을 위한 오육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의 양성과 인수교육 및 그 우대책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및 시설, 장비(오육시설, 직업보도시설, 특수시시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정구의 연구, 개발 8. 직업보도책의 강구 9. 점차도서간 등의 설치, 경영과 조부 10. 장학금, 기타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인	행	정	인
	<p>제5조 (무상교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 공립 또는 사람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p> <p>제6조 (사람의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보수와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그 과목별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한다.</p> <p>③ 배양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출, 생산, 보급 및 개척사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8조 (장학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 (학비감면 등)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과 장학제도 및 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조 특수교육의 실시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눈다.</p> <p>① 취학전 교육단계는 순회교육, 유치원의 통합교육, 특수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부에서 실시한다.</p> <p>② 의무교육단계는 순회교육, 국민학교, 중학교의 통합교육 및 특수학교 초등부, 중학부에서 실시한다.</p> <p>③ 의무교육 이후단계는 순회교육, 고등학교의 통합교육, 특수학교 고등부(전공과 포함)에서 실시한다.</p> <p>제6조 (무상교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 공립 또는 사람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p> <p>제7조 (사람의 특수학교 및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교육상 필요하거나 수용계획상 그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람의 특수학교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 특수학교의 서장이 총리특수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보조해야 한다.</p> <p>제8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한다.</p> <p>③ 배양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계인구기관 등을 지칭하여 생산, 보급할 수 있으며 편찬, 검정, 인출 및 개척사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9조 (학비감면 등)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인	행	정	인
	<p>제10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연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지연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고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1조 (간강진단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간강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고정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 (직업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교육 및 직업보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13조 (특수교육요원의 자격과 정원)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분수하는 특수교육요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특수교원의 지원(장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과 특수교육요원의 지원항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의 지원항상을 위하여 인수를 교육할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지원항상과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p>	<p>제10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연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고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1조 (간강진단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간강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 (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고등부 졸업자의 직업전문기술의 심화를 위하여 고등부 설치고는 수학년인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3조 (교육담당요원의 자격과 정원) 특수교육기관에는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특수교원의 지원(장학) 및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들의 지원항상을 위하여 적절한 인수시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수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인수시 교육과정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행능력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p> <p>③ 특수교원은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되어야 한다.</p> <p>④ 특수교원 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자와 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에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현	영	정	인
<p>제15조 (점차도서관) ① 점차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차도서관의 제작 2. 점차도서관의 일람 및 대출 3. 점차교육의 지도 4. 기타 시각장애자에 대한 지원 <p>② 점차도서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점차도서관의 설비·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15조 (개발화 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는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교육을 편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동부이하 과정에는 보조교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주어진 정편 범위내에서 교사의 배치종 조성을 관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16조 (특학·인시설 등) ① 특수교육기관은 학생들의 능력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사나 특학비스를 배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학교에는 수용된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두어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영	정	인
<p>제17조 (통합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할시라도 일반교육대상자와 같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히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p>②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p> <p>제18조 (특수교육자문위원)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특수교육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19조 (국립특수교육진흥원) 특수교육발진을 위하여 장애발 진원연구,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특수교원인수를 담당하는 국립특수교육진흥원을 설립·운영한다.</p> <p>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 비교 (공대위 안과 교육부 안)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18일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의 개정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특수교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6월 13일 '특수교육의 이념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재확인하고 '통합교육'을 새로운 법안의 이념적 기초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8월 17일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 및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초안을 1차 수정하였다.

이제 특수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특수교육법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한국특수교육협회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공대위에서 마련한 1차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교육법의 문제점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과 일반 교사의 자격에 차별을 두어 특수교육 교사의 위상을 흐려 놓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해 줌으로써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

셋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 특수교육 기관의 운영은 물론, 조기교육,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부모교육, 진로교육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념 및 원리를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간단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내용이 추상적이며, 의무규정보다는 권고나 임의규정이 많다. 문제점을 요약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학령교육보다 중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기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판별과 배치를 전담하는 판별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아 특수교육기관들의 판별 배치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 오래 전부터 장애아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육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 수많은 무허가 조기교육실이 난립하고 있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개별화교육 계획과 부모교육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과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불이익 처분의 금지와 진로 및 직업교육 등 기존의 규정은 있으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조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특수교육 관련법의 방향

교육법

홍익인간의 법 정신에 입각하여 특수교육을 일반교육에 통합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기회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과 교수능력을 신장케 하여 장애인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급에서나 장애의 정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계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분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일반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의 지위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이미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수교육진흥법은 시대적으로 빈약하고 뒤떨어진 내

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내용들을 거의 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하여 장애인 교육권의 보장과 통합 교육의 정신을 기초로 한 새로운 특수교육법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한국특수교육협회와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의지

현행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특수교육계 전반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1988년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그에 따라 최근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작년부터 한국특수교육협회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특수교육협회의 그러한 노력은 특수교육계 전반의 의견과 회원의 주축을 이루는 현장 특수교육 교사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특수교육협회는 교육법의 문제는 살피지 않은 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만을 다루고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 교원의 자격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특수교육협회가 정부안으로 상정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과 용어를 새롭게 규정한다.
- '순회교육'의 정의를 명시한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 고등학교와 전문부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제 운영비의 보조를 국·공립 수준으로 한다.
-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에 재학하는 자와 특수교육 기관에 재직하는 교원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되 그 실시를 원만히 하기 위해 국민학교 이하의 과정에서는 복수담임제를 한다.
-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담당 교원의 자격과 정원을 명시한다.
- 제 15조(점자 도서관)를 삭제한다.
- 기숙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골자를 내용으로 한 한국특수교육협회의 개정안이 올해 교육부에 의해 다소 수정 보완되어 최근 전문교수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배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 교원'을 일반교사로서의 자질 이외에 특수교육의 소양을 갖춘 자로서 특수교육 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라고 정의하여, 일본의 경우(일반교사 자격 + 특수교육 교사 자격)처럼 복수자격을 지향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상 필요하거나 수용 계획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립 특수학교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제경비를 공립 특수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하였다.
- 특수교육의 실시를 취학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 단계, 의무교육 이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고, 사실상 의무교육은 현행과 같이 국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만을, 무상교육은 고등학교와 전공과(한국특수교육협회 안에서는 "전문부") 과정으로 하도록 하였다.
- 직업교육을 위하여 고등부를 설치한 학교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별화 교육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국민학교 이하의 과정에는 보조교사를 둘 수 있게 하였다.
- 특수교육 기관은 반드시 통학 편의시설을 갖추고 기숙사가 있는 경우 보육사를 두도록 하였다.
-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교육이 부득이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통합교육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특수교육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하였다.
- 국립 특수교육 진흥원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한국특수교육협회와 교육부의 안을 비교해 보면, 크게 '특수교육 교원'의 정의와 '의무교육',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개별화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특수교육협회와는 달리, 일반교사의 특수교육계 진출을 사실상 묵인하고 열어주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정의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유치원부터 제안한 한국특수교육협회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도 한국특수교육협회와는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공립 특

수학교 수준으로 보조할 것을 명시하였다. 개별화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특수교육협회가 복수담임제를 제안한 반면 교육부는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의 의지

그동안 한국특수교육협회와 교육부에서 제안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현 특수교육의 이념과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는 있으나 부모와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공청회와 심포지움, 워크샵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기초로 마련한 공대위의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과 '특수교육법 제정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대위가 1차 워크샵까지를 끝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을 일반 교사의 자격과 동등하게 특수교육 정교사(1급·2급), 특수교육 준교사로 구분하고, 치료교육 교사를 새롭게 명시하였다.
- 장애인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 각급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장애인의 교육권을 가로막아 온 제 98조의 유예조항을 삭제하였다.
-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특수학교의 부설을 의무화하였다.
- 제 5장 제 9절의 '특수학교'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①특수학교의 설치 목적 ②특수학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③특수학교 입학 대상 ④특수학교의 종류 ⑤수업연한 ⑥전공과의 설치 ⑦특수학교 설치 의무와 분교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였다.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 사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교과와 별도로 규정하였다.

특수교육법 제정안

- 특수교육법의 목적을 정하고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 0세부터 학령전(국민학교 취학전)까지의 조기교육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특수교육권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특수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권자'라는 용어로 바꾸고 그 교육연령을 0세부터로 하였다.
- 조기교육과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였다.
-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까지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하였다.
- 순회교육의 실시를 명시하였다.
-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연 1회 이상의 연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사립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를 의무화 하였다.
- '시·군(구) 판별위원회', '시·도 판별위원회', '중앙 판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교육권자의 진단·판별·배치 등을 맡도록 하였다.
- 조기교육원의 설립허가를 법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권자의 학습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별화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계획 및 문서화, 누가관리 등을 규정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개별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8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실기교사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 특수교육 시설과 설비에 관한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마련하였다.
- 특수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권자에게 학비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모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다.
-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립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대위 안은 그동안 특수교육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해결책에 접근하는 안이라고 자부할만 하다. 그러나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이 안이 아직은 최종안이 아닌 만큼,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특수교육계 전반의 요구와 생각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과 특수교육법 제정 작업에 있어서 공대위는 정부와 특수교육협회, 기타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의견에도 성실하게 귀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특수교육 관련 법안 마련은 교사·부모·장애인·전문가·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전 특수교육계의 관심과 노력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머 모
